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423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1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.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제10조(행정사의 업무신고)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</u>	제10조(행정사의 업무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시장등</u>----- ----- -----

<u>한다</u>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(이하 “행정사업무신고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